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대관 내규

제 1조 [목적]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대관이란 대관자(또는 대관단체)가 실습, 각종 공연, 연습, 녹음, 녹화, 행사 등을 위하여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대관 승인이란 공연장 사용을 위하여 대관사용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단체에 대하여 본 대학교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대관 사용 승인함을 말한다.
- ③ 대관자(또는 대관단체)란 본 공연장에서 승인을 받아 공연 또는 행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 ④ 공연장이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또는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의 운영주체를 말한다.

제 3조 [대관의 종류]

대관 신청시기에 따라 우선대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신청 및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우선 대관은 매년 차기 년도 개시 전 학교 행사를 위한 대관 (이하 '학교대관' 이라 한다)으로 정기대관 시행 전 실시한다.
- ②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 년도 개시 전 본 공연장에서 정하는 기간에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내부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 ③ 수시대관은 우선대관 및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 일정이 발생할 경우 본 공연장에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내부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 ④ 대관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준비대관, 철수대관 및 행사대관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연대관은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 하여 실제 공연을 진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2. 준비대관은 공연 전 무대설치 및 공연 전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3. 철수 대관은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4. 행사대관은 공연이 아닌 강연, 세미나, 설명회 등을 말한다.
- ⑤ 공연이 1주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관객보호를 위하여 주 1회[월요일]를 무대점검일로 정하여 휴관하고 무대점검을 실시하며 무대점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른 날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제 4조 [대관신청 및 접수]

- ①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신청서를 본 공연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관신청서 작성 시 공연(행사) 일시, 공연(행사)명, 출연진, 프로그램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 ③ 신청기간은 본 공연장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정기대관 신청기간에 접수된 대관신청이 승인된 후 잔여일정이 발생하였거나 대관이 취소된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제 5조 [대관료]

- ① 본 공연장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대관료를 부과한다.

[기본대관료]

구분	대관료(기준: 1시간)			비 고
	월 - 목	금	토 - 일	
일반 행사(무료) 세미나, 강연, 설명회 등	200,000	240,000	280,000	기본 3시간
일반 행사(유료)/공연 순수 예술(클래식, 국악), 유료 강연 등	250,000	300,000	350,000	
일반 대중공연/방송 콘서트, 뮤지컬, 방송, 복 합장르 등	300,000	360,000	420,000	

- ② 준비 및 철수 대관료는 기본대관료의 50%를 부과한다.
- ③ 대관 가능시간인 (9:00 - 22:00) 이외에 대관을 신청할 경우 정상 대관료의 150%를 부과한다.
- ④ 부대시설 사용료는 <표1>에 따른다.
- ⑤ 학교 대관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별도의 대관료를 적용한다.

구분	할인율	조건
학교 본부	100%	입학식, 졸업식 등 학교 전체 행사
음악대학	100%	연간 10회 내 전공 수업 시행 시
교내기관	70%	교내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기본대관료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
학생	90%	동아리 발표회 등 학생이 주최가 되어 열리는 순수한 학생 공연 및 행사. (외부 대학 학생 참여 행사는 제외), 전체 대관료에 대해서 할인 적용
동문	50%	전체 출연인원의 80% 이상이 동문으로 이루어진 공연 및 행사, 기본대관료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

제 6조 [대관료 납부]

- ① 대관자(또는 대관단체)는 본 공연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관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전체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공연(행사)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대관계약 후 대관일정 변경이나 연장 등에 따라 대관료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해당 공연(행사) 시작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공연(행사)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공연(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대관계약 시기가 대관개시일 30일 이내일 경우 계약과 동시에 대관료 전액을 납부한다.
- ④ 대관기간 중 대관자(또는 대관단체)의 요청으로 휴관할 경우, 공연(행사)하지 않은 날의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 7조 [대관료 반환]

- ① 대관자(또는 대관단체)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연장의 내부심의를 거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백주년기념관 내에서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연(행사)전: 납입한 대관료의 100%/공연(행사)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의 100% 반환)
 2.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공연(행사)전: 납입한 대관료의 100%/공연(행사)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의 100% 반환)
 3. 대관자(또는 대관단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취소를 신청하여 공연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대관 개시일로부터 60일전: 계약금의 100% 반환
대관 개시일로부터 30일전: 계약금의 50% 반환
대관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소 시: 대관료 반환 불가
- ② 대관료 반환 시점은 취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8조 [대관승인]

- ① 대관승인은 공연장의 내부 심의를 거쳐 승인하며, 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줄 수 있다.
 1. 신청인이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및 기획사인 경우
 2. 출연자 및 스태프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3. 대관자(또는 대관단체)의 전년도 본 공연장 사용 실적이 우수한 경우
 4. 공연(행사) 규모가 객석규모에 부합하는 경우
- ② 대관일수나 일정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창단공연,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공연단체 및 대행사 순으로 대관 한다.

2. 단체[대행사]와 개인 간의 경합일 때에는 단체[대행사]에 우선 대관 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본 공연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공연장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 9조 [대관신청 제한]

- ① 본 공연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인 경우
 4. 대관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5. 기타 공연(행사)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전년도 대관료 미납 및 상습 체납 단체의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대관 취소 및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 10조 [대관승인 취소]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또는 대관단체)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연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공연장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공연장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공연장의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5.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위 1항의 각호에 해당하여 대관승인이 취소된 경우, 기 납입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관 개시 일에 임박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대관 시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1조 [대관신청 내용 변경 및 취소]

- ① 대관자(또는 대관단체)는 대관 신청 시 명시한 내용 (공연(행사)명, 공연(행사)일정, 출연자, 공연(행사) 내용 등)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관자(또는 대관단체)가 대관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관 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취소된 공연(행사) 일수에 대하여 기본대관료의 50%를 적용한다.

- ③ 공연(행사) 준비기간이 시작된 후 대관자(또는 대관단체)의 사정으로 공연 대관기간 중 공연(행사)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관자(또는 대관단체)는 공연대관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공연장은 대관자(또는 대관단체)가 공연장 또는 부대시설 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추가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료를 부과한다.
- ⑤ 대관자(또는 대관단체)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⑥ 대관자(또는 대관단체)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할 경우 대관자(또는 대관단체)가 기 납부한 대관료는 제 7조에 의해 처리된다.

제 12조 [입장권 발권]

- ① 대관자(또는 대관단체)는 대관료 전액을 납부 후 입장권 판매 또는 발권을 진행할 수 있다.
- ② 공연장은 총 829석 (1층 613석, 2층 216석, 휠체어석 8석)으로 공연 특성에 따라 일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 ③ 공연장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일부 좌석을 하우스 티켓(유보석)으로 공연장에 제공해야 하며 일반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1층 J열 34번 - 49번/16매)

제 13조 [공연(행사) 진행 협조]

- ① 스탭회의
 - 1. 대관자(또는 대관단체)는 대관개시일 최소 15일전까지 스탭회의를 진행하여 공연(행사) 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2. 대관자(또는 대관단체)는 스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대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 ② 무대 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
 - 1. 대관자(또는 대관단체)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설치는 기술 검토 후 공연장의 관리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 2. 공연(행사)과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또는 대관단체)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공연장의 기술감독이 진다.
- ③ 공연(행사) 진행
 - 1. 공연(행사) 당일의 진행은 공연(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행사) 종료 마감 까지를 말한다.
 - 2. 대관자(또는 대관단체)는 공연장 기술감독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연(행사)진행 중 문제발생 시 공연장 기술감독은 공연(행사) 시작을 지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3. 공연(행사) 진행과 관련한 하우스 운영(객석관리, 공연진행, 안전관리 등)은 대관자(또는 대관단체)가 총괄 운영한다.

제 14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① 대관자(또는 대관단체)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또는 대관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연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1.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금지
 - 2. 공연장 내 화환 반입 및 허가 받지 않은 홍보물[현수막, 현판, 배너 등] 설치 금지
 - 3. 5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 사용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 합격 시 사용 가능
 - 4. 외부 무대장치 사용 시 관계법령에 의거 방염처리를 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사용가능
 - 5. 대관이 종료되거나 해약 및 정지된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반드시 원상회복 조치
 - 6. 공연장 및 교내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파손 및 사고 발생 시 그 피해액을 즉각 보상
- ③ 대관자(또는 대관단체)는 공연장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15조 [운영위원회]

- ① 공연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음악대학장(위원장), 음악대학 부학장, 음악대학 5개 학과장, 총무부처장(또는 총무팀장), 문화예술지원팀장(간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역할은 공연장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매 학기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2020년 3월 1일 공연 및 행사부터 적용됨.

<표1> 부대시설 사용료

분 류	목 록	사용료	비 고
악기	피아노	100,000	2대/대당 사용료/조율비 별도
	오르간	100,000	
무대	덧마루(합창단)	100,000	
	연주용 보면대	100,000	20개 이상 사용시 사용료 부과
	연주용 의자	100,000	
	단상	0	
음향	기본음향	100,000	
	메인 스피커	300,000	
	음향반사판	100,000	
	유선마이크	0	기본음향 포함
	무선 및 핀 마이크	10,000	1대당
조명	기본조명	100,000	
영상	기본영상	100,000	
	좌우 프로젝터	100,000	스크린 포함
	중앙 프로젝터	300,000	
기타	냉난방	100,000	시간당/기본2시간 이상 신청 가능